

공간의 성격변화에 따른 Hybrid Policing의 치안활동 영역에 관한 이론적 고찰

서진석*

<목 차>

- I. 서론
- III. Hybrid Policing의 치안활동 영역
- II. 공간의 성격변화에 관한 이론적 논의
- IV. 결론

<요 약>

공간의 성격 구분에 있어 기존의 공적인 공간과 사적인 공간의 이분법적 구분법이 가능했을 때는 치안제도에 있어서도 공적인 치안만으로 사회질서유지가 가능하였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발달로 인해 거대 사적 재산층이 형성되면서 사적인 공간의 규모가 커지고 그에 따른 사적인 치안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거대 자본가들은 자신들의 재산과 신변보호를 위한 별도의 치안제도를 두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사회변화 양상이 더욱 다양화 되고,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공간의 성격도 단순한 이분법적 구분으로 설명할 수 없는 공간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즉, 공적인 공간과 사적인 공간의 중간계층인 제3의 공간이 형성된 것이다. 제3의 공간은 기존의 공적인 치안과 사적인 치안외의 추가의 치안수요를 창출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치안수요를 담당할 치안제도를 혼성적 치안이라고 한다.

혼성적 치안제도는 공적인 치안과 사적인 치안의 성격과 법적 지위가 혼합된 치안제도로서 치안수요의 다양화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Johnston에 의하면 혼성적 치안제도의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이며, 미래 치안제도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청원경찰제도나 특수경비원제도의 경우 혼성적 치안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향후 치안수요의 다양화 추세에 따라 혼성적 치안제도의 한국적 모델을 개발하여 한국 사회의 치안지수를 향상시키는데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주제어 : 공간, 공적인 치안, 사적인 치안, 혼성적 치안】

* 중부대학교 경찰경호학과 교수, 행정학박사

I. 서 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정보사회라 부르고 있다. 20세기 중반부터 정보화사회의 성격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엄청난 속도의 사회변화를 겪고 있다. 특히 정보사회는 사회적 가치의 변화뿐 아니라 사회변화 속도를 빠르게 촉진하고 있는 것이다.

급속한 사회변화는 다른 분야의 변화를 유도한다. 인간의 일상생활뿐 아니라 치안환경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특히 모든 사회적 활동과 개인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의 성격을 변화시킴으로써 치안제도의 새로운 변화를 유발한다.

공간은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공적인 공간이 있고, 개인성이 강한 사적인 공간이 존재한다. 기존의 치안기구들은 공공의 질서유지를 목표로, 주로 공적인 공간에서의 치안활동을 주 대상으로 하였다. 상대적으로 사적인 공간은 공적인 치안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왔던 것이다. 그러나 가정에 대한 상대적 약자를 보호하기 시작하게 되면서 사적인 공간에 공적인 치안이 관여하게 되었다.

자본주의의 발달로 거대 사적 재산가가 출현하고 국가내의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형평성을 이념으로 하는 공적인 치안만으로 거대 자본가의 치안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자, 자본가들을 위한 별도의 사적인 치안기구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공적인 공간과 새로이 거대한 사적인 공간이 형성되자 사회내의 치안기구들은 공적인 치안기구들과 사적인 치안기구들로 구분되어 사회질서유지 기능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급속한 사회변화는 공간의 성격을 변화시키고, 기존의 공적인 공간과 사적인 공간 외에 새로운 다양한 공간들은 출현시키고 있다. 즉, 가상공간과 공적인 공간이면서 사적인 성격이 가미된 공간, 사적인 공간이면서 공적인 공간의 성격이 가미된 공간 그리고 공적·사적 공간의 성격이 균형을 이루는 공간 등이 출현한 것이다. 치안기구들은 공간을 활동 영역으로 삼고 있다. 공간의 이러한 성격변화는 이를 활동 영역으로 하는 치안구조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새로운 공간의 출현과 공간의 성격 변화는 기존의 치안기구들로 그 수요를 감당하기에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가는 공간의 성격변화에 따른 치안수요에 대응 할 수 있는 새로운 치안기구들을 모색 하게 된다. 오늘날 영국을 비롯한 선진 각국에서 치안활동의 대상 영역인 공간의 성격에 따른 다양한 치안기구들이 발전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라 할 수 있다. 공간에 대한 성격이 공적인 성격과 사적인 성격이 다양한 비율로 혼합된 공간으로 변하자, 치안기구들도 공적인 성격과 사적인 성격이 혼합된 혼성적 치안기구(hybrid policing)들이 출현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간의 성격 변화에 대한 제 이론적 논의를 통해 공간의 변화양상을 고찰하고 그에 따른 치안제도의 변화를 분석한다.

둘째, 혼성적 치안(hybrid policing)의 유형과 치안활동 영역을 고찰한다.

본 연구는 치안활동의 대상 영역인 공간의 성격 변화와 그에 따른 치안기구로서 혼성적 치안기구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의 방법은 국내외 관련 문헌을 분석하는 문헌연구방법에 의존하고자 한다.

II. 공간의 성격변화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공간의 본성과 변화양상

공간이라는 용어는 통상 물리적 환경과 도시의 환경 조성과 같이 그것이 배치되는 방식을 지칭한다. 공간이라는 용어는 비록 나름의 속성을 갖기는 하지만, 동시에 사회적 약정¹⁾의 산물로서 상호작용적이고 경험적인 공간을 지칭하기도 한다. Reiss는 공간에 대하여 ‘공간과 이것이 관련된 다른 용어들의 정의는 우리가 일상적 삶을 살 때 그 안에서 움직이는 현실을 사회적으로 구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Reiss, 1987).

공적 영역으로서의 공간의 개념은 지리적 의미의 특정한 위치를 갖지 않으며, 물리적 경계보다는 제도, 정당, 사회운동 등에 의해 구조된다. 또한 공간에는 기술적 정보 교환의 장으로서 cyber-space가 있는데 이 공간 자체도 치안의 범주에 포함된다.

현대산업사회의 특징 중 하나인 도시화로 인하여 도시 공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공적 영역은 이질적인 사회성의 장소라고 표현되고 있다. 현대 도시에서의 사회적 생활은 중요한 공적 영역(국가, 시장, 관료적 조직)과, 친밀하고 감정적인 사적 영역 사이에서 점점 더 양극화 되어가고 있다. 공적 공간에 대한 이런 관점은 Jacobs의 저서와 관련된다. Jacobs는 인간의 구성물로서의 도시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1960년대까지 북미와 유럽에서 지배적이었던 개발계획 활동들을 공격하였다(Jacobs, 1961). 개발계획 입안자들은 대도시에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중심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생활을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유토피아적 이상에 의해 점점 더 영향을 받고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거리는 사회활동들과 관계없는 통행로일 뿐이며, 사회적 활동은 지정된 건물과 장소에서만 일어난다(Dunlop, 1995). Jacobs의 개발 계획 이론은 도시에서의 삶을 유기적 전체로서 보지 못하고, 건물과 땅이라는 그릇 속에 편리하게 넣을 수 있는 기능들로 도시의 삶을 나누려고만 했다고 비판하였다.(Jacobs, 1961). Jacobs는 이것은 공적 공간과 공적 영역을 명백하게 거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Jacobs, 1961). Weintraub은 공적 영역의 이러한 개념을 다양성과 물리적인 근접에도 불구하고 유지되는 사회적 약정들에 의해 매개되는 사회성의 영역이라고 묘사하였다(Weintraub, 1995: 296). 따라서 공간에 대한 논의는 물리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 모두를 포함하여야 한다.

페미니스트들은 공간의 또 다른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들은 국가, 시장 같은 공적 영역과 가족이라는 보다 숨겨진 공간을 대조시킨다. 이러한 접근은 경제적-부문적 차원에서는 민간기업에 의한 사적인 조직과 활동들을 명백히 공적인 것으로 분류한다. 페미니스트들은 우선 사적인 것이 무엇이냐를 개념적으로 규정하고 나서 공적인 것은 그 나머지로 분류한다. 페미니스트들에게 공통된 3가지 관점이 있다(Donzelot, 1979). 첫째, 이들은 다른 전통에 속하는 학자들은 가정적 영역을 소홀히 다룬다고 주장한다. 둘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구분은 매우 성차별적인 구분이고, 전통

1)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사적 공간에 침입했다고 할 때

적으로 여성들은 가정의 영역의 한정되어졌으며 그 안에서조차 종속적인 위치에 있었다. 셋째, 가정의 영역을 사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것은 여태까지는 가정내 확대와 종속을 정치적 조사와 법적 대상에서 벗어난 영역으로 규정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사적 공간'이 가정의 치안이 유지되는 방식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가정 폭력과 아동 학대에 대한 연구들은 여성 운동이 치안의 영역에서 어떻게 전통적인 의미의 민간부문에 도전했는지를 보여준다. '가정성(domesticity)'이라는 이데올로기는 1950-60년대에 특히 강조되었는데, 가정을 여성의 안전한 영역으로 규정하고, 사적인 영역을 본질적으로 국가의 영역밖에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다(Stanko, 1998).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은 거의 숨겨지거나 경찰관에게는 단순히 가정적인 것이나 사적인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들의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되었다(Hammer, Radford and Stanko, 1989). 그러한 접근법은 여성 운동에 의해 도전 받았고, 그 결과 치안 정책에 중요한 발전이 나타나게 되었다(Newburn and Smith, 1994).

이들의 캠페인은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특정한 폭력들을 공적인 것으로 인식시키려 노력하였다. 그래서 강간과 성폭력, 특히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에 대한 치안 정책의 발전은 이런 문제들을 점차로 공적 감시의 영역에 편입시켰고, 따라서 경찰과 법정은 이런 폭력으로부터 여성과 아동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입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런 의미의 공간은 물리적으로는 실제의 한 가정 속으로 규정되고, 사회적으로는 친밀성의 영역으로 규정된다.

다양한 공간들 간의 경계는 항상 물리적 방식으로 규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회적 조건에 따라 변하기도 한다²⁾. 사회적 약정에 의해 사적인 공간이 되는 공간의 크기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사적인 공간이 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크기의 공간이 해변이 붐비게 되면 더 좁아지게 된다. 공적 장소 안에서도 상황에 따라 위협받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개인적 공간이라는 것이 있다³⁾.

다양한 형태의 공간이 있을 뿐 아니라, 공간 자체는 환원될 수 없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도시 공간 안에는 상대적으로 공적인 공간과 상대적으로 사적인 공간이 존재하고, 이 공간들은 모두 사회적 약정과 물리적 통제에 의해 규정된다. 상업적 기업들의 사무실이 밀집해 있는 구역은 사적인 공간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일상적으로 그곳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청소부, 방문객, 건물 유지 노동자(전기공 등) 같은 지정된 사람들에는 개방되어 있다. 그 구역에 들어가는 것은 개인성이 증가되는 공간으로서의 진입을 의미한다.

공적인 거리로부터 건물의 현관으로 들어갈 때 현관에는 책상과 경비원이 서있고 이들의 존재는 분명한 이유가 없는 방문객은 배제하겠다는 상징이다. 현관을 지나서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로 이동한다. 회사의 사무실은 공간 안에서도 다양한 정도의 개인성이 존재한다. 복도나 계단은

-
- 2) 사람들이 썬텐도하고 소풍도 가는 공적 해변을 예를 들어보자. 이 해변에 누구나 올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 공간은 공적인 것이다. 하지만 한 사람이나 한 단체의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그 공간을 사용하는 동안에는, 그들이 사용하는 공간과 그 주위의 약간의 공간은 사적인 것이 된다.
 - 3)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많을 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 옆에 붙어 서 있다면 별 문제 없지만, 사람이 별로 없는데도 그렇게 서 있다면 그는 다른 사람의 개인적 공간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된다.

보다 공적이고 개인 사무실은 보다 사적이며, 화장실은 보다 더 사적이다.

2. 공간의 이분법적 구분의 한계

Hunter는 공적인 공간과 사적인 공간의 중간적 성격을 갖는 공간을 설정한다(Hunter, 1995). 그는 공간을 세 종류의 층으로 구분한다. 즉 공적인 층, 소교구적(parochial) 층, 사적인 층이 그것이다. 각 층은 특정한 제도적 공간적 영역을 갖는다.

이러한 접근은 역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엄격한 구분의 한계를 가져온다. 그리고 중간적 영역인 소교구적 층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다. 사적인 층은 정감과 사회적 지지와 존중에 기초한 가정과 1차 집단에 초점을 맞춘다. 사적인 층은 우정으로 맺어진 사람들과 친척에 제한된다. 소교구적 층은 지역 공동체 사회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상점, 학교, 교회, 조합 같은 제도들과 사적인 층이 맞물리게 될 때 생겨난다. 마지막으로 공적인 층은 주로 국가의 관료적 기구 등에서 발견된다. 공적인 층은 궁극적으로는 강제력의 합법적 사용을 독점하는 국가에 의해 구조화 된다.

Hunter는 비록 범죄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경찰과 형사 사법제도를 필요로 하게 되었지만, 범죄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많은 근원을 사적이고 소교구적인 층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Hunter, 1995). 예를 들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사실 실제 범죄와 관련된 것이라기보다는 상징적인 행동과 관련된 것이다. 이러한 반사회적 행동들은 도시생활의 불안을 야기한다. 따라서 보다 강력한 소교구적 차원에서의 사회통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가 소교구적 층을 지지해주어야 한다. 사적인 층을 학교, 교회, 청년클럽 같은 소교구적 층과 연결시킴으로써 사적인 층이 사회통제 활동에서 받는 제한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개인적 유대에 의한 강력한 사회통제가 비로소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다.

현대 도시에 있어서 공적 공간은 공원이나 시장과 같은 물리적 공간이건 또는 집단적인 행동에 참여하는 성향을 띤 미묘한 공적 공간이건 간에 점차 쇠퇴해가고 있다. Kasinitz는 공적 생활의 구조가 도시에서는 허물어져가고 있다고 본다. 가난하고 집이 없는 사람들은 공적인 장소로 내던져 졌고⁴⁾, 범죄와 무례한 행위 때문에 사람들은 공적 공간에 있거나 공적 삶에 참여하기를 꺼리게 되었다(Kasinitz, 1995).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의도된 정치적인 조치들은 실제로는 공적 삶에 의미 있게 참여하는 것을 막는 결과를 가져왔다.

3. 공간의 성격변화에 따른 치안제도의 변화

Shearing과 Stenning은 공적 공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관심을 두고 있다(Shearing and Stenning, 1981). 그들은 사적 치안이 증가하는 이유를 재산관계 성격의 변화로 설명하는데, 특히 거대 사적 재산의 증가로 설명한다⁵⁾. 그들은 사적 치안이 증가하는 것은 주로 사적 재산 안

4) 우리나라에서도 1997년 IMF사태로 인한 대규모 실업자와 파산자가 생겨나면서 주거를 잃은 가정 이 공원이나 지하철역 등 공적공간으로 주거를 옮긴 적이 있었다.

에서 발견되는 공적 공간의 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즉 의식적인 치안업무의 개인화나 치안 예산 감축과 관계없이 공적 경찰업무의 자연 영역이 줄어들고 사적 치안유지의 영역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이 거대 사적 재산의 예로 들고 있는 것은 커다란 쇼핑 몰, 사적으로 소유된 입구가 있는 공동체, 출입이 통제되는 거주 구역과 공원, 대규모의 위락과 교육 복합체 등이다. 이러한 것들은 비록 사적으로 소유된 것이기는 하나 대중들이 어느 정도 출입할 수 있는 거대한 공적 공간들이다. 이러한 공간들에서 공적 경찰업무의 자연 영역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거대 사적 재산의 본질적 요소는 공간의 본성과 관련된 것이다. 공간의 물리적 크기는 분명히 중요한 측면이지만, 무엇보다도 공간을 공적인 것으로 만든 많은 사람들이 그 장소에 다소간 일상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치안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실은 소규모의 투자가가 아니라 큰 규모의 회사가 그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대규모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형평성을 이념으로 하는 공적 치안으로는 불안을 느낀다. 이러한 불안은 사적 치안의 수요를 창출하게 되는 것이다.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공간의 형태들을 단순히 공적 공간과 사적공간의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존재하는 공간의 형태들은 복잡한 것이다. 공간의 성격을 공공성과 개인성의 정도에 대한 차이의 문제로 본다면 공적인 공간과 사적인 공간의 모델을 받아들일 수 있다. '공적'이라는 한쪽 극단에서는 국가에 의해 소유되고 모든 사람을 위해 존재하며, 모든 사람이 별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커다랗고 개방된 공간이 있다. 그 제한들이란 보통은 물리적 통제나 법보다는 비공식적 사회 통제들이다. 반대쪽 끝에는 개인적 가정운영, 소수의 사람만이 접근할 수 있고 거의 사회로부터 숨겨진 공간이 있다.

공간의 성격을 고찰하면 논의 되어야할 여러 수준의 문제들이 도출된다. 첫째, 누가 그 공간에 일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가? 예를 들면 대규모의 회사 단지나 대학교는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곳은 아니다. 따라서 결정적인 특색은 이 공간들은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거대한 공간이고,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면 이 공간은 어떤 공적 성격을 갖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 누가 그 공간을 소유하는가? 셋째, 그 공간으로의 접근을 어떤 식으로 통제하는가? 출입구나 빗장 등 물리적 통제인가? 아니면 비공식적 통제와 신호인가? 등이다.

따라서 공간의 성격이 분화되고 기존의 이분법적 사고로는 공간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게 되었다. 치안활동의 대상인 공간의 성격 변화는 치안구조의 변화를 유발한다. 공간의 성격은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의 양 극단을 잇는 일직선 상의 어느 위치에 존재하느냐가 있을 뿐이다. 공간의 성격이 순수 공적 공간에 위치하고 있으면 공적 치안활동의 대상이 되며, 순수 사적 공간에 위치하고 있으면 사적 치안활동의 대상이 된다.

-
- 5) 자본주의의 발달은 거대 사적 재산을 형성하게 하며, 거대 사적 재산가들은 그들의 재산과 신변 보호를 위하여 공적 치안제도에만 의존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자본가들의 수요에 따라 사적 치안제도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라 더욱 심화될 것이다.
 - 6) 이는 공공성과 개인성의 양극단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간이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의 양 일직선상의 어느 위치에 있으면 치안활동도 공적 치안과 사적 치안의 성격이 혼합된 치안대상이 된다. 공간의 양 극단을 잇는 일직선상에서 어느 쪽에 조금 더 치우쳐있는가에 따라 치안구조의 성격도 공적 치안의 성격과 사적 치안의 성격의 비율이 달라질 것이다.

정보사회의 진전에 따라 공간의 성격은 또 다른 변화를 겪고 있다. 즉 가상공간(syber-space)의 출현이 그것이다. 또한 휴대전화는 공적인 공간 내에서 사적인 공간을 낳고, 그것은 흔히 공적인 공간을 위협하기도 한다⁷⁾.

Ⅲ. Hybrid Policing의 치안활동 영역

1. Hybrid Policing의 개념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영국은 형사사법서비스를 공급하는 몇 가지 제도들을 시행한 바 있다. 영국은 1980년대부터 공공서비스 공급 운영에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근본적인 개혁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개혁에는 위탁 운영, 임무수행 척도개발, 경영적이고 재정적인 책임이 정치적 책임을 대체하고, 소비자 수사학(consumer rhetoric: 적극적으로 서비스 수요자를 유치하는 방법)의 개발 등의 사업을 포함하였다. 그래서 수감자 이송 같은 업무가 계약의 형태로 민간에 이전되었고, 몇 개의 교도소는 민간회사에게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다. 1980년대 후반에는 이미 서비스공급 형태(즉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이나)의 복잡성이 형사사법서비스의 분야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Mathews, 1989). 1990년대에는 일련의 독립정부기관들, 재판소들, 국가 및 지방자치요원들이 경찰, 보호관찰 서비스 등과 형사사법체계에 포함되기에 이르렀다.

치안서비스의 경우 이러한 복잡성은 더욱 명백하게 보인다. 예를 들면, Hoogenboom에 의하면 비록 국가에 소속된 치안담당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치안업무를 수행하는 기구들을 조사하고 있다(Hoogenboom, 1991: 17-30). 그는 네덜란드에서 40여 개의 다양한 기구들을 발견하였는데 이 기구의 직원은 20,000명 정도이고 이들은 통제와 규제의 권한을 갖고 있다. 그는 공경찰 외에도 'grey policing'⁸⁾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규제 기구와 민간경비회사의 조합으로 구성된 치안 복합 단체가 생겨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 그는 'grey policing'을 '전통적인 의미의 책임성과는 다른 책임성을 갖는 다양한 사회통제기구로 구성된 비공식적 형태의 협동체'로 정의한다(Hoogenboom, 1991: 18) 'grey policing'에 관하여 Hoogenboom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구분법

7) 즉 휴대전화를 이용한 능형시험 부정이 예가 될 수 있으며, 지하철이나 버스안에서 휴대전화의 통화는 공공장소를 침범한 사적 공간에 대한 혐오감을 준다.

8) grey policing은 white policing을 공적 치안이라 가정하고 black policing을 사적 치안이라 가정할 때 white와 black의 중간색으로 공적 치안과 사적 치안의 성격이 혼합된 혼성적 치안(hybrid policing)의 다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자체를 의문시한다. 그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구별이 점차로 희미해진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Lipietz는 치안서비스에 대하여 국가에 의한 공급과 시장원리에 의한 공급 사이의 제3의 부문 즉, 제3섹터를 개념화 하였다(Lipietz, 1992). 제3섹터라는 용어는 영국에서는 자선이나 자원봉사 같은 부문에 속하는 비영리 조직이 봉사활동이나 일자리 알선 등의 사회적 목표를 전통적으로 민간부문 혹은 공공부문으로 여겨지는 범위의 밖에서 추구할 때 이 조직들을 지칭하기 위해 쓰인다(Wilson, 1996). 제3섹터에 대한 최근의 연구에 위하면 영국에서는 이 부문에서 일하는 사람이 천백만명 정도이고 1분기 총매출액이 16조 파운드에 이른다고 보고하였다(Cameron, 1997: 79-88).

Schmitter는 국가와 이익집단의 관계는 국가의 공식적 승인, 정부 보조금, 고도의 책임성, 비공식적 연관관계 등의 항목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삼투작용으로 인해 점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구분이 희미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Schmitter, 1974: 85-131). Savas도 정부의 직접적인 서비스공급부터 자원 봉사에 이르기까지의 서비스공급 제도의 다양성을 부각시키는데, 이것은 다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단순한 이분법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Savas, 1982).

Johnston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이분법적 구분법으로 단순하게 확정될 수 없는 복잡한 치안 공급의 형태를 설명하기 위하여 제3섹터로서 '혼성적 치안기관(Hybrid policing agency)'이라는 개념을 도입한다. 혼성적 치안기관들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이분법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 그는 혼성적 치안기관의 대표적 형태를 다섯 가지로 제시한다. 첫째, 국가안전유지 기능을 수행하는 M15와 같은 기관이 있다. 둘째, 특정한 국회제정법에 근거한 권한을 부여받은 특수 경찰들이다. 예를 들면 지방 당국에 의해 고용된 공원 경찰과 옥스퍼드 대학의 학생감 등이 이에 해당된다. 셋째, 몇몇의 정부 부처들에 속해있는 조사와 규제, 그리고 법적 강제력을 집행할 의무를 갖는 부서들(예를 들면, 세금 조사관). 넷째, 지방 당국에 의해 고용되어 조사와 규제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들(예를 들면, 환경 보호 담당관). 마지막으로 영국 전신 조사관(British Telecom Investigation)같은 기구들이 있다. 영국에서는 이러한 혼성적 치안기관들이 활동하고 있다(Jones and Newburn, 1988: 39).

다양한 치안 기구들이 존재하고 그들 간의 연관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치안에 대해 고찰하는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국가 기관의 공공서비스 정신이 시장 원리와 민간기업 운영방식의 도입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지금까지 공공서비스로 여겨지던 것들을 점점 더 많이 공급하게 된 민간 기업들도 영향을 받고 있다. 예를 들면 사적 재산을 경비하는 보다 전형적인 업무를 수행할 때와는 다르게, 죄수 호송과 같은 공적 서비스를 공급하면서 민간경비 업체들은 예전과는 다른 측면들을 고려해야 했다. 민간경비 업체들이 공적 서비스를 수행함에 따라 이 기업들의 영리 추구성(Profit ethos)이 어느 정도까지 변형되는가는 앞으로의 연구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집단적으로 공급되는 다른 상품에서와 마찬가지로 치안서비스도 공급형태의 다양성과 분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Johnston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이분법은 제도와 활동을 체계적으로 완벽하게 구분해낼 수는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 이분법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이 이분법은 다양한 형태들과 체계들을 비교하고 설명할 정도로는 충분히 현실과 일치하는 모델이라는 것이다. 이 이분법은 사회적 현상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심화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는 개념적 도구이다. 따라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부문적 연속선(sectoral continuum)은 여전히 유용하다는 것이다. 그 연속선의 한쪽 끝인 공공부문은 국가에 의해 서비스가 공급되고, 그 비용은 세금으로 조달되며, 서비스를 수행하는 사람은 국가에서 고용한 사람들이고, 기구들은 엄격하게 비시장적이며 관료적으로 운영된다. 연속선의 반대쪽 끝인 민간부문에서는 개인들이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사적 기업들로부터 서비스를 구매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서비스 공급의 형태는 국가적, 시장적, 그리고 제3섹터의 성격을 모두 가지면서 그 양극단 사이의 어딘가에 위치한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공급의 '공공부문적'인 형태와 '민간부문적'인 형태는 중요하고도 지속적인 차이를 갖는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라는 개념은 비록 제한적이지만, 여러 형태들을 비교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형태들의 복잡성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2. Hybrid Policing의 치안활동 영역

1) 혼성적 치안기구의 개념 및 법적 권한

혼성적(Hybrid)이란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두 종류의 조합(combination)을 의미한다(Jones & Newburn, 1998: 204). Johnston(1992)은 혼성적 치안기구(hybrid policing)는 공식적 위상과 활동영역이 공적-사적 영역에 걸쳐있는 일련의 복잡한 치안기구들로 구성된다고 하면서, 혼성적 치안기구들은 민간경비회사나 내무성 소속 경찰 같은 기구들과는 다른 기구들로 구성되는 치안기구들이라고 정의하였다.

혼성적 치안기구들은 일부는 조직화되어 있고, 제복착용을 한 기구들이다. 그리고 주어진 상황에서 특수한 범집행권의 대리자로서 구성될 뿐이다. 일부기구들은 완전한 경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 인력을 고용하고 있으며, 다른 몇몇 기구들은 그렇지 않다. 대부분의 혼성적 치안기구가 범집행권을 행사할 때는 관할권의 제한을 받는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혼성적 치안기구들의 범집행권은 공경찰보다 더욱 제한적이다. 그러나 공경찰의 법적 권한을 넘어선 권한을 보유한 특수경찰과 같은 혼성적 치안기구도 있다.

2) 혼성적 치안기구의 유형과 활동 영역

혼성적 치안기구들은 주로 영국의 공원경찰(Parks Police), 환경보건 담당관(EHOs: Environmental Health Officers), 소득사기조사관(BFI: Benefit Fraud Investigators), 주택순찰대

(Housing Patrollers), 영국교통경찰관(BTP: British Transport Police), 보건과 안전 집행관(HSE: Health and Safety Executive), 우편조사 담당부서 조사관(POID: Post Office Investigation Department)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다양한 혼성적 치안기구들이 존재한다. Campus Police, Park Police(공원경찰) 등이 있다. 이러한 치안기구들은 제한적이지만 관할구역 내에서 법 집행권의 일부를 보유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청원경찰⁹⁾과 특수경비원이 혼성적 치안기구의 유형으로 볼 수 있다.

Johnston(1992)은 영국에서 혼성적 치안기구의 대표적 형태를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제시한다. 첫 번째는 국가안전유지기능을 수행하는 이민국(immigration staff)과 같은 기관이 해당된다. 이민국은 수사, 구류, 체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외에 교도관(prison officers)과 다양한 영역의 군사경찰이 해당된다. 두 번째는 국회제정법에 근거하여 특정한 권한을 부여받은 특수경찰들이다. 특수경찰은 철도, 하천, 운하, 터널, 항만 등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면서 발달하였다. 특수경찰은 수송영역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지방당국에 의해 고용된 공원경찰과 옥스퍼드대학의 학생감 등도 관할구역 내에서 법적 권한을 부여받았다. 세 번째는 정부부처들에 속해있는 조사와 규제 및 법적 강제력을 집행할 의무를 갖는 부서들이다. 예를 들면 사회치안부서의 조직화된 사기예방과(the Organized Fraud Section of the Department of Social Security), 내륙세무조사관(the Board of the Inland Revenue Investigation Office) 등이다. 네델란드에서도 2만 명의 사람들이 40여 개의 이러한 치안조직에 고용되어있다. 네 번째는 지방당국에 의해 고용되어 범죄예방 활동 뿐 아니라 교육복지, 환경보전 등의 조사와 규제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들이다. 환경보호담당관이 이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잡다한 규제와 조사단체들로서 영국전기통신조사국(the British Telecom Investigation Department) 과 같은 사적법인들과 BBC조사국(the BBC Investigator's Office)과 같은 공적 법인들 사이의 기구들이 포함될 수 있다. 기관 지위의 공적주체들로서 국립하천국(the National Rivers Authority), 사적 사업을 수행하는 공적 주체들로서 우편조사 담당부서 조사관(POID: Post Office Investigation Department), 그리고 국가로부터 허가 받은 사적 주체들로서 영국의료협회(the British Medical Association)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혼성적 치안기구들의 거대한 영역은 그동안 경찰연구의 범주로부터 배제되어 왔었다(Johnston, 1992: 117). Johnston은 혼성적 치안기구와 공적 치안기구, 그리고 사적 치안기구의 복잡한 관련성을 구분하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치안주체들이 누구에게 책임을 지는가(국가나 정부의 특수법인, 사적 주체들, 유사-사적 주체들) 둘째, 치안기구들이 수행하는 기능(공적 재산, 사적 재산, 혹은 어떤 목적을 위한 공적으로 간주되는 사적 재산의 보호) 셋째, 기능들이 수행되는 장소(공적 장소, 사적 장소, 혹은 공적 장소와 사적 장소) 넷째, 다른 치안주체들과의 관련성(내무성소속 경찰, 민간경비, 군대) 다섯째, 민영화 정신의 영향 등이다.

9) 청원경찰은 민간인 신분이면서 청원경찰법 제3조에 의거“- 경비구역 안에 한하여 경비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민간인 신분인 사적 치안의 성격과 공적 치안의 법적 권한을 일부 보유하고 있으므로 혼성적 치안의 유형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제8차 개정 경비업법(2001년 4월 8일 개정)에 의해 신설된 특수경비원도 유사한 성격의 치안유형이라 할 수 있다.

IV. 결 론

공간의 성격은 기존의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의 이분법적 구분에서 다양한 유형의 공간의 출현으로 인하여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인간은 그것이 어떤 성격의 공간이건 간에 공간 속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한다. 공간은 인간의 일상생활 영역인 동시에 사회적 활동의 장이기도 하다. 따라서 공간은 치안활동의 대상 영역인 것이다.

공간에 대한 성격 변화는 기존의 이분법적 구분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치안활동의 대상인 공간이 성격 변화를 거듭함에 따라 공간에 대한 새로운 성격 규명이 필요하게 되었다. 새로운 성격의 공간은 기존의 공적인 공간과 사적인 공간의 성격이 혼재된 혼성적 공간의 성격을 대표적으로 갖는다.

공간의 성격이 다양해짐에 따라 다양한 공간속에서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는 인간은 공간의 성격에 따른 치안기구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국가는 이러한 치안수요에 맞추어 사회통제기능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 것이다. 공적인 성격의 공간과 사적인 성격의 공간이 혼합된 공간의 출현은 공적인 치안의 성격과 사적인 치안의 성격이 혼합된 치안기구를 출현시켰다. 복잡하고 다양한 공간의 출현은 공적 치안기구나 사적 치안기구만으로는 원활한 사회통제가 어렵게 되자, 선진 각국에서는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는 치안기구의 모델로서 혼성적 치안기구를 제도화 하게 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치안수요를 창출하고 있는 공간의 성격변화에 따른 이론적 논의를 통하여 혼성적 치안의 성격과 활동 영역을 고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혼성적 치안기구는 복잡한 공간의 성격에 따른 다양한 치안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탄력성을 보유하고 있다. 공공성을 특징으로 하는 공적인 치안기구들과 기업성을 특징으로 하는 사적인 치안기구들은 공적인 측면과 사적인 측면의 양 극단의 치안기구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간의 성격이 혼합된 제3의 공간은 제3의 치안기구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앞에서 언급했듯이 청원경찰이나 특수경비원의 경우처럼 특정 성격의 공간에 맞는 치안기구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공간의 성격 변화에 따라 혼성적 치안수요가 출현하고 있다. 따라서 혼성적 치안제도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의 향후 치안제도의 새로운 모델로 심층적 연구가 시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단행본>

- 남승길(1995). 「경찰작용법에 관한 연구」. 서울: 치안연구소.
- 법무부(1988). 「각국의 사법경찰제도」. 법무자료 제98집. 법무부.
- 서진석(2005). 「경비지도사 민간경비론」. 서울: 백산출판사.
- 이윤근(2001). 「민간경비론」. 서울: 엑스퍼트.
- 정진환(1994). 「미국경찰론」. 서울: 양영각.
- (2005). 「경비업법」. 서울: 백산출판사.
- (2006). 「경찰행정론」. 서울: 대영문화사.
- (2006). 「비교경찰제도론」. 서울: 백산출판사.
- 치안본부(1988). 「외국경찰제도」. 서울: 치안본부.
- 치안본부(1984). 「2000년대의 경찰」(유인물). 서울: 치안본부.
- 형사정책연구원(1991). 「민간경비의 육성과 방범능력 증대 방안 연구」. 서울: 형사정책연구원.

<국내논문>

- 김기수(1984). “영국경찰제도의 중앙집권화추세에 관한 연구”. 「치안논총」, 제3집.
- 서진석(2000). “치안환경 변화에 따른 경찰과 민간경비의 역할분담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남: 경원대학교 대학원.
- 이윤근(1989). “한국민간경비 발전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997). “각국 민간경비산업의 발달과정과 향후전망”. 「논문집」. 한국경호경비학회.
- 정진환(1980). “영국의 경찰제도”, 「치안문제」, 1980년 10월호. 서울: 치안문제연구소.
- (1987).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제도 연구”. 「논문집」, 제11집. 인천: 인천대학교.
- (1987). “영미법계 국가의 경찰제도연구”. 「논문집」, 제11집.
인천: 인천대학교.
- (1989). “미국경찰의 조직과 관리에 관한 연구”. 「정일서재근박사
화갑기념논문집」. 서울: 서재근박사 화갑기념논문집 발간위원회.
- 허경미(1998). “민간경비산업의 발전방안에 관한연구”. 「치안정책연구」 제10호. 경찰대학 치안
연구소.

2. 외국문헌

- Adams, T. F.(1971). *Police Patrol: Tactics and Techniques*, New Jersey: Preutice-Hall, Inc.
- Ascoli, D.(1979). *The Queen's Peace*, London: Hamish Hamilton.

- Banton, M.(1964). *The Policeman in the Community*, New York: Basic Books.
- Bayley, D. H.(1975). *The police & political development in Europe*, Charles Tilly ed. The Formation of National States in Europe, Princeton University Press.
- _____.(1983). "Knowledge of the police", in M. Punch (ed.) *Control in the Police Organization*, Cambridge, Mass.: MIT Press.
- _____.(1987). 'Foreword', in Shearing, C. D. and Stenning, P. C. (1987) *Private Policing*, Newbury Park, Cal.: Sage.
- _____.(1994). *Police for the Futur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Beck, A. and Willis, A.(1995). *Crime and Security: Managing the Risk to Safe Shopping*, Leicester: Perpetuity Press.
- Bittner, E.(1970). *The Functions of the police in Modern Society*, Washington D. C.: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 _____.(1974). Florence Nightingale in pursuit of Willie Sutton: A theory of the police, in H. Jacob, ed. *The Potential for Reform of Criminal Justice*, Newbury Park, Cal.:Sage.
- _____.(1980). *The Function of the Police in Modern Society*, Cambridge, Mass: Oelgeschlager, Gunn and Hain.
- Bobbio, N.(1989). *Democracy and Dictatorship*,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Bozeman, B.(1987). *All Organisations are Public*, San Francisco.
- Cain, M.(1979). "Trends in the sociology of police work",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Sociology of Law*, 7, 2.
- Cameron, A.(1997). "In Search of the Voluntary Sector", *Journal of Social Policy* 26, 1, pp. 79-88.
- Cramer, J.(1964). *The World's Police*. London: Cassel & Co.
- Cohen, S.(1979). "The punitive city: Notes on the dispersal of social control", *Contemporary Crisis*, 3, 4, pp. 339-364.
- _____.(1985). *Visions of Social Control*, Cambridge: Polity Press.
- Coleman, A.(1985). *Utopia on Trial*, London: Hilary Shipman.
- Critchely, T. A(1972). *A History of Police in England and Wales*, 2nd ed. rev. Montclair: Patterson Smith.
- Cunningham, W. C., and Van Meter, Clifford W.,(1990). *The Hallcrest Report II: Private Security, Trends 1970 to 2000*, Boston, MA: Butterworth-Heinemann.
- Daley, R.(1974). *Target Blue*. New York: Dell Books.
- Davis, M.(1990). *City of Quartz*, London: Vintage.
- DiGrazia, R.(1975). *A message from the Commissioner. Annual Report. Boston Police Department*.

- Dixon, D., Coleman, C. and Bottomley, K.(1990). "Consent and the Legal Regulation of Policing", *Journal of Law and Society* 17, 3, pp. 345-362.
- Donzelot, J.(1979). *The Policing of Families*, London: Hutchinson.
- Dunlop, R.(1995). *Public Art and the Contemporary Urban Environment*, Unpublished PH.D. thesis, University of Westminster.
- Ericson, R.(1994). The division of expert knowledge in policing and security,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45, 2.
- Fielding, N.(1988). *Joining Forces: Police training, socialisation and occupational competence*, London: Routledge.
- Fosdick, R. B.(1972). *European Police System*. Montclair: Patterson Smith.
- Garland, D.(1996). *The Limits of the Sovereign State*, The British
- Goldstein, H.(1977). *Policing a Free Society*. Cambridge: Ballinger.
- Hanmer, J., Radford, J. and Stanko, E. A. (eds.)(1989). *Women, Policing and Male Violence*, London: Routledge.
- Holdaway, S.(1983). *Inside the British Police*, Oxford: Basil Blackwell.
- Hoogenboom, A. B.(1991). Grey policing: a theoretical Framework, *Policing and Society*, 2, 1.
- Hunter, A.(1995). "Private, parochial and public social order: The problem of crime and incivility in urban communities", in Kasinitz, P. (ed.) *Metropolis: Centre and Symbol of our Times*, Basingstocke: Macmillan.
- Hutter, B.(1988). *The Reasonable Arm of the Law*, Oxford: Clarendon Press.
- Jacobs, J.(1961). *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 New York: Random House.
- Johnston, L.(1992). *The Rebirth of Private Policing*, London: Routledge.
- _____.(1993). "Privatisation and protection: spatial and sectoral ideologies in British policing and crime prevention", *Modern Law Review*, 56, 6, pp.771-792.
- _____.(1996a). "Policing diversity: the impact of the public-private complex in policing", in Leishman, F., Loveday, B. and Savage, S. (eds.) *Core Issues in Policing*, Harlow: Longman.
- Jones, T.(1995). *Policing and Democracy in the Netherlands*, London: PSI.
- _____. and Newburn, T.(1995), "How Big is the Private Security Sector?", *Policing and Society*, 5, pp. 221-232.
- _____.(1997). *Policing After the Act*, London: Police Studies Institute.
- _____.(1998). *Private Security and Public Policing*, Oxford: Clarendon Press.
- _____. and Smith, D. J.(1994), *Democracy and Policing*, London: PSI.
- Journal of Criminology* 36(4), Autumn.
- Kasinitz, P. (ed.),(1995). *Metropolis: Centre and Symbol of our Times*, Basingstocke: Macmillan.

- Leigh, L.(1985). *Police Powers in England and Wales*, London: Butterworths.
- Lipietz, A.(1992). *Towards a New Order: PostFordism, Ecology and Democracy*, Cambridge: Polity Press.
- Lipson, L.(1970). *The Great Issues of Politics*,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 Loader, I.(1997a). Policing and the social,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48, 1, pp. 1-18.
- _____.(1997b). "Thinking normatively about private security", *Journal of Law and Society*, 24, 3, pp. 1-31.
- Manning, P.(1977). *Police Work*, Cambridge, Mass.: MIT Press.
- Marx, G. T.(1987). "The interweaving of public and private police in undercover work", in Shearing, C. D. and Stenning, P. C. (eds.) (1987).
- Matthews, R.(1989). "Privatization in perspective", in Matthews, R. (ed.) *Privatizing Criminal Justice*, London: Sage.
- Miller, J. P. and Luke, D. E.(1977). *Law Enforcement by Public Officials and Special Police Forces*, London: Home Office.
- National Advisory Committee on Criminal Justice Standards and Goals(1976). *Report of the Task Force on Private Security*. Washington D.C : Government Printing office.
- Newburn, T., and Jones, T.(1977). 'Police Accountability,' in Saulsbury, W., Mott, J. and Newburn, T. *Themes in Contemporary policing*, London: Policy Studies Institute/police Foundation.
- Nemeth, C. P.(1981). *Private Security and the Law*. Cincinnati, OH: Anderson Publishing Co.
- Oliver, Ian.(1970). *Police, Government and Accountability*(Second edition). London: McMillan Press LTD.
- Palmer, S.H.(1988). *Police and Protest in England and Ireland 1780-185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itkin, H. (1984). *Fortune is a Wome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President's Commission in Law Enforcement and Administration of, Justice.(1967), *Field Studies IV, The Police and the Community*, Vol. II.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Popper, K. R.(1968). *The Scientific Discovery*, New York: Harper and Row.
- Punch, M.(1979). 'The Secret social service,'in Holdaway,S.(ed.) *The British Police*, London: Edward Arnold.
- Reiner, R.(1991). *Chief Constabl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1992a). 'Policing a postmodern society,' *Modern Law Review*,55,6 pp.761-81.
- _____.(1992b). *The Politics of the Police*, Hemel Hempstead: Harvester.
- _____.(1992c). 'Police Research in the United Kingdom,' In M. Torsy and N.

- Morris(eds.) *Modern Policing: Crime and Justice: A Review of the Research*,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_____.(1993). 'Police accountability: principles, patterns and practices', in Reiner, R. and Spencer, S. (eds.) *Accountable Policing : Effectiveness, empowerment and equity*, London: IPPR.
- Reiss, A. J. (1971). *The Police and the Public*,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_____.(1987). 'The legitimacy of intrusion into private space', in Shearing, C. D. and Stenning, P. C.(1987), *Private Policing*, Newbury Park, Cal.: Sage.
- Rosenthal, U. and Hoogenboom, B. (1988). 'Some fundamental questions on privatisation and commercialisation of crime control, with special reference to developments in the Netherlands', Paper presented to the eighteenth criminological research conference on the privatisation of crime control, Council of Europe, Strasbourg, 21-5 Nov. 1988.
- Savas, E. S. (1982). *Privatizing the Public Sector*, Chatham, New Jersey: Chatham House Publishers.
- Schmitter, P. (1974). Still the century of corporatism? *Review of Politics*, 36.
- Shearing, C. D.(1996). 'Public and private policing', in Saulsbury, W., Mott, J. and Newborn, T. (eds.) *Themes in Contemporary Policing*, London: Police Foundation/policy Studies Institute.
- _____ and Stenning, P.C.(1981). 'Modern private security: Its growth and implications,' in Tonry, M. and Morris, N. (eds.) *Crime and Justice: An Annual Review of Research*,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_____ and _____ (1983). 'Private Security-implications for social control,'*Social Problems* 30, 5.
- _____ and _____ (eds.) (1987). *Private Policing*, Newbury Park, Cal.: Sage.
- Shapland, J. (1989), 'Views on crime: public and private problems', Paper presented at the British Criminology Conference, Bristol Polytechnic, July 1987.
- _____ and Vagg, J. (1987). 'Policing by the public and policing by the police', in Willmott, P. (ed.) *Policing and the Community*, London: Policy Studies Institute.
- _____ and _____ (1988). *Policing by the Public*, London: Routledge.
- Smith, A. [1776] (1981). *The Wealth of Nations*, Harmondsworth: Penguin.
- Smith,D.J.(1983). *Police and people in LondonIII: A Survey of Police officers*, London: Policy Studies Institute.
- Spitzer, S. and Scull, A.(1977). Privatisation and capitalist development: the case of private police, *Social Problems* 25, 1.
- Spitzer, S. (1987). 'Security and control in capitalist societies: the fetishism of security and the secret thereof', in Lowman, J., Menzies, R. J. and Palys, T. S. (eds.)

- Transcarceration: Essays in the sociology of social control, Aldershot: Gower.
- Stanko, E. A. (1988). 'Hidden violence against women', in Maguire, M. and Pointing, J. (eds.) *Victims of Crime: A New Deal?*, Milton Keynes: Open University Press.
- Steedman, C.(1984). *Policing the Victorian Community: The formation of English provincial police forces 1856-80*,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 Sullivan, J. L.(1977). *Introduction to Police Science*. New York: McGraw-Hill Books Co.
- The Security Time, Vol. 206.
- Timm, Howard W. and Kenneth E. Christian.(1991). *Introduction to Private Security 1991*. California: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 Trueit, A. Ricks and Bill, G. Tillet.(1981). *Principles of Security*. Cincinnati, Ohio: Anderson Publishing Co.
- Walker, S.(1980). *Popular justi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1983). *The Police in America- An Introduction*. New York: McGraw-Hill Book Co.
- .(1992). *The Police In America: An Introduction*. NY: McGraw-Hill, Inc.
- Weintraub, J.(1995). *Varieties and Vicissitudes of Public Space*, in Kasinitz, P. ed. *Metropolis: Centre and Symbol of our Times*, Basingstoke: Macmillan.
- .(1995). 'Varieties and Vicissitudes of Public Space', in Kasinitz, P.(ed.) *Metropolis: Cenyre and symbol of our times*, Basingstoke: Macmillan.
- Wilson, J. O. and Kelly, G.(1982). 'Broken Windows' *Atlantic Monthly*, March, pp. 27-38.
- Wilson, S. (1966). *New Challenges for Work and Society: Can the social Economy Provide An Answer? Report of a Seminar of the franco-British Council*, 5-6 Dec. 1995. London: Franco-British Council.
- Wilson, J. Q.(1973). *Varieties of Police Behavior*. New York: Atheneum.

ABSTRACT

A Study on the Hybrid Policing of Policing Space Follow Character Alteration of Space

Seo, Jin Seok

When the character of space could be dichotomized into the existing public space and private space, social order could be maintained by public policing only. Since enormous private property was formed and private space was enlarged by the development of capitalism, however, the necessity of private policing system came to the front. The large capitalists began to establish separate policing system to protect their property and safety.

However, as social alteration was further diversified scale of economy was enlarged, the character of space could not be simply explained owing to the formation of space that could not be explained by simple dichotomous division. Namely, the 3rd space was formed as middle class between public space and private space. The 3rd space created additional demand of policing besides the existing public policing and private policing. The policing system to satisfy such demand of policing is called hybrid policing.

As policing system in which character and legal status of public policing and private policing are mixed, the hybrid policing system may be originated from the diversification of demand of policing. Johnston insists that the demand of hybrid policing system will be further increased, becoming the model of policing system in the future. In Korea, the police guard system or special guard system can be classified into the type of hybrid policing.

In accordance with the trend of diversified demand of policing in the future, I suggest to develop Korean model of hybrid policing system so that it can be utilized in elevating the policing index in Korean society.

[Key Words: space, public policing, private policing, hybrid policing]